

■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

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(제14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
- 2) 해당 기관이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해당 기관이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조문	처분기준		
		1차	2차	3차
가. 전문교육기관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	법 제29조 제5항			
1)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	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
2)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한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		경고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
나. 전문교육기관이 법 제29조제4항 및	법 제29조	경고	업무정지	지정취소

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	제5항		3개월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	-----	--